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6.9.28.)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8.(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8. 24.

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7명

다. 회부일자: 2026. 8. 27. (의안번호 제39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6.9.28.)

2. 제안설명 요지 (전홍표 의원)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 창구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문을 신설함. (안 제7조제1항제11호)

나. 별표 1의 제목을 제명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1)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 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1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별표 1]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56조[1]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수수료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때,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안내함.

○ 수수료 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살펴보면,

- 감면 대상인 민원 문서는 총 12종으로, 2025년 기준 해당 민원서류의 수수료 수입은 1억 1천만 원이며 이는 2025년 창원시 전체 세외수입(517,320백만원)의 0.02% 수준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한 지출은 2025년 기준 6억 6천만 원으로, 발급기 구입비(교체· 신설), 재료비(소모품 등), 유지보수비, 방법용역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수수료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임.

1)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종합 의견**

○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 · 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류로, 수수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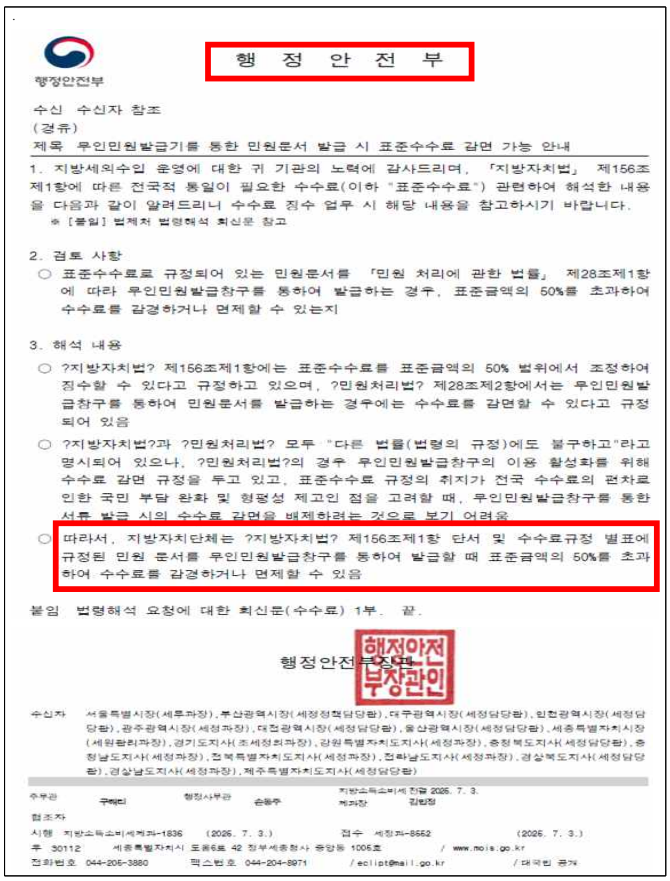
○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전체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지자체가 56개이며, 일부 서류 면제까지 포함할 경우 총 96개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는 창원시 전역에 총 137대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비해 시민들의 생활권 곳곳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는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민원 편의성이 높음. 이에 수수료까지 면제할 경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커져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수료 면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해당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방문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민원 창구 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도 크지 않은 반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행정안전부 공문**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36(2025.7.3.)]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표준수수료 감면 가능 안내

1. 지방세의수입 운영에 대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이하 "표준수수료") 관련하여 해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수료 징수 업무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참고

2. 검토 사항
○ 표준수수료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문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3. 해석 내용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는 표준수수료를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과 ?민원처리법? 모두 "다른 법률(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민원처리법?의 경우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표준수수료 규정의 취지가 전국 수수료의 편차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인 점을 고려할 때,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서류 발급 시의 수수료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민원 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때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붙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수수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해정안전부장관인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정책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과장),대전광역시장(세정담당관),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원관리과장),경기도지사(조세정책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구혜리 행정사무관 손동주 지방소득소비세 전결 2025. 7. 3. 과장 김범정

협조자

시행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36 (2025. 7. 3.) 접수 세정과-8662 (2025. 7. 3.)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유양동 1006호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880 팩스번호 044-204-8971 / eclipt@mail.go.kr / 대국민 공개

6.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